〈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6129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12.28 www.chinesechung.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2.11.11

정 보 공 개 서

비컨홀딩스 주식회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전화번호 : 070-4150-6711
대표팩스번호 : 02-2038-3156
담당전화번호 : 070-4150-6711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 외 2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 7. 24.	2003. 8. 1.	정보람	070-4150-6711	02-2038-3156
	법인등록번호	110111-2828080	사업자등록번호	214-87-3861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정보람/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청화당 /토마틸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보람	070-4150-6711	02-2038-3156
사내이사	조형석/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청화당 /토마틸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보람	070-4150-6711	02-2038-3156
사내이사	김태우/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청화당 /토마틸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보람	070-4150-6711	02-2038-3156
감사	정경한/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청화당 /토마틸로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보람	070-4150-6711	02-2038-3156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청	중식요리점을 표현하기 위함
상 호	청 OO점	
상표	清)BHI	등록번호 : 4101440500000 등록일자 : 2007.02.05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3년	1,926,823	2,813,461	-886,637	7,432,897	-330,051	1,917,560
2022년	2,669,797	5,511,068	-2,841,271	9,579,867	-993,481	-1,847,505
2021년	3,357,558	3,406,224	-48,665	7,513,243	-842,883	-1,041,066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는 정보공개 바로 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위 1)의 2022년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보람	대표이사	2023.12.31~현재	대표이사	가맹사업운영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형석	사내이사	2023.12.31~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운영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태우	사내이사	2023.12.31~현재	사내이사	가맹사업운영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경한	감사	2023.12.31~현재	감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가맹사업 경영	2019.10.01 ~2020.08(정보공개서 자진취소)	오랄레 (등록번호:20160045)라는 영업표지의 멕시칸음식 외식사업 경영
			2019.10.01~현재	토마틸로 (등록번호:2016004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6.09 ~ 현재	청화당 (등록번호:2017006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清)BHI	상표사용 대가 수수	출원일자 2006.03.02 등록일자 2007.02.05	출원 제4120060004993호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2027. 2. 5.
			등록 제4101440500000호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청] 가맹사업 현황

1. “청”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 9. 15

2. 청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	유성호	2015.09. ~ 2019.09.31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16 (논현동, 대일빌딩 340호)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	유성호	2019.10.01. ~ 2022.07.13	서울 성동구 동일로 89, 201호(성수동2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	남화민	2022.07.13. ~ 2023.12.31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9층 911, 912호 (성수동2가, 성수역 SK V1 Tower)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	정보람	2023.12.31. ~ 현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2층 (상암동, 서울경제진흥원)

3. 청 업종

영업표지	업종	
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중국요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청]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2	6	4	2	5	3	2
서울	2	-	2	2	-	2	2	-	2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청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4	-	-	1	-	3
2022	4	-	-	-	-	4
2021	3	1	-	-	-	4

6. 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청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청화당	20170066	기타외식업	2/0	2/0	3/0
		토마틸로	20160044	기타외식업	4/0	3/0	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는 2023년 청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3	972,585	33,083	1,461,243	106,617	602,282	20,125	3곳 산정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1	산출불가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산출불가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1	산출불가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청]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3	1,22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청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2023연중	4,467	4,467	-
광고	-	2023연중	4,467	4,467	-
판촉	-	-	-	-	-

11. 가맹금 예치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기업거래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20	1577-8008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위 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증서를 다운 받아 설치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의 이름을 찾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상기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SGI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비컨홀딩스 주식회사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16,500원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5,500원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가맹비	16,5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과 동시지급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계약종료 시 잔존 채무공제 후 반환. 이자 미발생

다만 미수 발생시 공제 하여 반환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2,000
가맹비	16,500
교육비	5,500
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물품의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132㎡(40평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19,050	5,476	가맹계약 체결시 개별계약		단순 합계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인테리어 설비	가맹본부	150,000	3,75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전 실비는 상계처리
간판	타사업체(미지정)	2,750				
내외부실사	타사업체(미지정)	3,300				
주방설비 등	(비공개)	50,000	1,250			
오픈관련	가맹본부	5,000			제공후 반환 안됨	제공전의 경우 실비는 상계처리
POS	(비공개)	3,000				
초도물품	가맹본부	5,0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지의 지정업체가 아닌 직접 인테리어를 할 경우 감리에 대한 대가로 3.3m²당 금삼십삼만원(₩330,000)(VAT포함)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상기 비용 이외에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통신

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샷시공사, 간판/사인/어닝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간선공사, 철거공사, 냉난방 설치공사, 가구공사는 상기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공사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이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보건증을 소지할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 금전지급방법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16,500	총액의 10%	총액의 80%	총액의 10%
납부일		계약체결시	교육시작 10일 전	교육시작시
비고				

※ 금전지급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	로열티	총매출액의 3.3%	매월 27일			반환불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청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비컨홀딩스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사는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청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없음	-	-	-

※ 당사는 직전 사업년도에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없음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2) 당사가 [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없음	-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비컨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제공된 상품 및 용역 일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절차 준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

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청,청화당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

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청'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해당없음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해당없음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61	39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청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 6개월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반포삼겹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정해진 초도 물품과 상품 기타 장비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40조 제1항
○ “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을”이 제10조 내지 제15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을”이 개설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그 밖의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1조 제40조 제1항
○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4조 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을”이 제7조제5항 및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가맹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제22조 제 1항 내지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을”이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이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을”이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을”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제31조 제40조 제1항
○“을”이 3회 이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을”이 제28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이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을”이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주류대리점을 교체한 경우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제35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0조 제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o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 가맹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최장 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70-4150-6711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대리행사, 업무위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최장 30일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청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중국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 청의 메뉴와 50% 이상 중복되는 메뉴를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70-4150-671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청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24시간 다만, 상호협의 하에 조정가능	월 27일 운영 권유 다만, 특수한 상권의 경우 휴업일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문의: 070-4150-67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상시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포인트카드	각 가맹점 개별사용 포인트카드	없음	포인트카드 서비스로 인한 비용 전액 부담	가맹점 행사계획 본사 통보 → 본사 승인 → 행사 시행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정보공개서 Ⅳ. 가맹사업자의 부담 1, 2항목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 상담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	ㅇ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지원	가맹점 개점 이후	없음	가맹점주와	150 내외	

	판촉비용 지원		상의 후 결정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070-4150-671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070-4150-6711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청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서울시 경영안정화 지원자금 등 각종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신규 교육	13일	5,000	최초 계약시 이수
특별 교육	3일	100(변경가능)	필요시 이수
재교육	3일	100(변경가능)	필요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특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갤러리아 명품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34, 지하 1층
2	서울	리플레이스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47-24 2층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9년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926,944	본 매출액은 POS상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70-4150-6711)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원부재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주방용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4 청 메뉴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홍식초 해물냉채S	왼쪽에기재된이외의 제품을판매할수없음.	1회위반:서면시정 요구	전채류[메뉴대분류]
홍식초 해물냉채R			
청특선 모듬냉채S			
청특선 모듬냉채R			
오향장육 샐러드S			
오향장육 샐러드R			
양장피 샐러드S			
양장피 샐러드R			
샥스핀 전복 야채스프			스프류[메뉴대분류]
게살샥스핀 스프			
새우 완자탕			
산라탕			
게살옥수수 스프			
송이 통 샥스핀 찜			샥스핀류[메뉴대분류]
굴소스 통 샥스핀찜			
홍파 샥스핀찜			
북경 팔진샥스핀S			
북경 팔진샥스핀R			
부용게살 샥스핀S			
부용게살 샥스핀R			
비풍 통해삼			해삼류[메뉴대분류]
사천식 통해삼조림			
해삼전복S			
해삼전복R			
금사오롱S			
금사오롱R			
해삼탕S			
해삼탕R			
해삼쥬스S			
해삼쥬스R			
가상해삼관자S			
가상해삼관자R			
발채 통전복아스파라거스			전복류[메뉴대분류]
송이버섯과 전복S			
송이버섯과 전복R			
해삼송이 통가리비볶음S			관자류[메뉴대분류]
해삼송이 통가리비볶음R			
검은콩국수 통가리비찜S			
검은콩국수 통가리비찜R			

검은콩국수 게살관자찜S			
검은콩국수 게살관자찜R			
송이관자 아스파라거스 볶음S			
송이관자 아스파라거스 볶음R			
전가복S			해선류[메뉴대분류]
전가복R			
해물누룽지탕S			
해물누룽지탕R			
류산슬S			
류산슬R			
사천식 팔보채S			
사천식 팔보채R			
사천식 새우관자볶음S			
사천식 새우관자볶음R			
철판어향가지와두부S			
철판어향가지와두부R			
중화오징어튀김			
X.O. 소스삼선 해물과소고기S			
X.O. 소스삼선 해물과소고기R			
굴 튀김S			
굴 튀김R			
왕새우			새우바닷가재류[메뉴대분류]
중새우S			
중새우R			
멘보샤S			
멘보샤R			
바닷가재 양상추 쌈S			
바닷가재 양상추 쌈R			
통 바닷가재 마파두부S			
통 바닷가재 마파두부R			
안심스테이크			소돼지류[메뉴대분류]
발채삼고와 소고기안심볶음S			
발채삼고와 소고기안심볶음R			
소고기양상추 쌈S			
소고기양상추 쌈R			
소고기 피망볶음S			
소고기 피망볶음R			
소고기 탕수육S			

소고기 탕수육R			
소고기 버섯말이S			
소고기 버섯말이R			
난자완스S			
난자완스R			
전풍우육S			
전풍우육R			
동파육과 청경채S			
동파육과 청경채R			
매콤한 가지와 회과육S			
매콤한 가지와 회과육R			
깐풍육S			
깐풍육R			
중화풍 돼지갈비S			
중화풍 돼지갈비R			
탕수육S			
탕수육R			
북경오리			닭/오리고기류[메뉴대분류]
좌종당계S			
좌종당계R			
전풍기S			
전풍기R			
깐풍기S			
깐풍기R			
긴장소스 유린기S			
긴장소스 유린기R			
라조기S			
라조기R			
궁보기정S			
궁보기정R			
레몬기S			
레몬기R			
일품두부와 비타민			두부류[메뉴대분류]
사천식 마파두부S			
사천식 마파두부R			
가상두부S			
가상두부R			
송이버섯과 아스파라거스볶음S			잡품류[메뉴대분류]
송이버섯과 아스파라거스볶음R			
모듬 버섯볶음S			

모듬 버섯볶음R			
탕수버섯S			
탕수버섯R			
찰판어향소스 가지볶음S			
찰판어향소스 가지볶음R			
특별야채볶음S			
특별야채볶음R			
계절춘권			
자춘권과경장유슬			
천패설리			후식류[메뉴대분류]
과일시미로			
크리스탈 찹살떡			
고구마맛탕			
중식 해물죽			식사류[메뉴대분류]
해물잡탕밥			
류산슬 덮밥			
마파두부 덮밥			
X.O 볶음밥			
새우야채볶음밥			
팔진탕면			
우육탕면			
팔진차우면			
삼선짬뽕			
사천식 흰잠뽕			
삼선자장면			
삼겹살자장면			
산라탕면			
계절탕면			
중식냉면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샤토 테이시에, 조나단 말터스	왼쪽에 기재 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이상위반: 계약해지	와인[메뉴대분류]
테누타 디 아글라이아			와인[메뉴대분류]
지아코모 그리말디, 바르베라 달바 '피스틴'			와인[메뉴대분류]
알토, 알토			와인[메뉴대분류]
핑구스, PSI			와인[메뉴대분류]
보데가 이 비네도스 발데리즈, 발데르모소 로블			와인[메뉴대분류]
텍스트북, 미장 플라스 카버넷 쇼비뇽			와인[메뉴대분류]
매티스			와인[메뉴대분류]
텍스트북, 팡 드 주네			와인[메뉴대분류]
브록 셀라즈, 카시아			와인[메뉴대분류]
조셉 펠프스, 이니스프리 카버넷 쇼비뇽			와인[메뉴대분류]
75 와인즈, 카버넷 쇼비뇽			와인[메뉴대분류]
코엘료, 아트라싸오 윌라멧 밸리			와인[메뉴대분류]
브록 셀라즈, 바인스타			와인[메뉴대분류]
몰리두커, 카니발 오브 러브			와인[메뉴대분류]
몰리두커, 블루 아이드 보이			와인[메뉴대분류]
몰리두커, 메이터 D			와인[메뉴대분류]
투 핸즈, 엔젤스 쉐어, 쉬라즈			와인[메뉴대분류]
킬리카눈, 더 캐리 쉬라즈			와인[메뉴대분류]
산타리타, 메달라 레알 카버넷 쇼비뇽			와인[메뉴대분류]
카르멘, 그랑 리제르바 까르미네르			와인[메뉴대분류]
오베하 네그라, 카버넷 쉬라 리제르바(B)			와인[메뉴대분류]
오베하 네그라, 카버넷 쉬라 리제르바(G)			와인[메뉴대분류]
헤페바이젠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엠버에일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인디카 IPA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워터멜론 위트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발라스트 포인트 스컬핀 IPA	왼쪽에 기재 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2회 이상위반: 계약해지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칭따오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브루클린 라거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브루클린 IPA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브루클린 브라운 에일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브루클린 소라치 에이스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블루문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로스트 코스트 탠저린 위트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사무엘 아담스 보스턴 라거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시메이 트리펠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시메이 블루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베스트말러 듀벨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베스트말러 트리펠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라 트라페 쿼드러플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맥켈란 15년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더 글렌 리벳 12년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글렌피딕 15년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발베니 더블 우드 12년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화이트에일			맥주/위스키[메뉴대분류]
오량액			중국술[메뉴대분류]
공부가주 500ml			중국술[메뉴대분류]
공부가주 250ml			중국술[메뉴대분류]
공부가주 125ml			중국술[메뉴대분류]
연태고량주 500ml			중국술[메뉴대분류]
연태고량주 250ml			중국술[메뉴대분류]
연태고량주 125ml			중국술[메뉴대분류]
예가체프			커피/음료[메뉴대분류]

별첨5 직전년도 주요품목 공급가격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 가격 (단위 : 원)		거래상대방
		상한	하한	
-	없음	-	-	-